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36
----------	-------

발의연월일 : 2026. 3. 4.

발 의 자 : 조정훈 · 김민전 · 박충권
김용태 · 서지영 · 정성국
김대식 · 김은혜 · 김장겸
최수진 · 조지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진료비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2025년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가구는 591만가구, 반려견이 546만마리, 반려묘는 217만마리로 반려가구 및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 2년간 반려동물 진료비로 2023년의 두 배인 146만 3천원이 지출되었음.

최근 반려동물 진료비의 지출 부담으로 인하여 병에 걸린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려동물을 위하여 지급한 진료비

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여 주고, 반려동물 예방접종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본문 중 “제59조의4제9항”을 “제59조의4제10항”으로 한다.

제59조의4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제1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까지”를 “제10항까지”로 한다.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이하 “반려동물”이라 한다)을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려동물진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2(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반려동물을 위하여 지급한 진료비(제2호의 진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을 위하여 지급한 진료비. 다만, 제1호의 진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제61조제1항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제5항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려동물진료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반려동물진료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제59조의4제9항”을 “제59조의4제10항”으로 한다.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9조의4제9항”을 “제59조의4제10항”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0조제1항, 제70조의2제2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7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과 <u>제59조의4제9항</u> 에 따른 표준세액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 <u>제59조의4제10항</u>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u>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이하 “반려동물”이라 한다)을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려동물진료비를 지급한 경우</u>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⑦ · ⑧ (생략)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2(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반려동물을 위하여 지급한 진료비(제2호의 진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을 위하여 지급한 진료비. 다만, 제1호의 진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제5항까지-----

-----.

⑧ · 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2. (생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세액공제”라 한다.

⑪ (생략)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 방법 등) ① 제5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

⑩ -----

--.

1. -----
제7항-----

2. (현행과 같음)

⑪ -----제10항까지-----

-----.

⑫ (현행 제11항과 같음)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 방법 등) ① -----
-----제5항과 「조세특례제한법」-----

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